

과업지시서

1. 과업명 : 식사지구 수리시설정비사업 폐기물처리 용역

2. 목 적

- 본 과업지시서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작업과 관련하여 폐기물 관리법에 적용, 처리되어야 하고 사전에 불법으로 처리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.

3. 용역대상

가. 공사개요

(1) 위 치 :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일원

(2) 공사규모(예정물량)

○ 폐기물 수집·운반 및 처리 : 248ton

- 폐콘크리트 : 248ton

- 폐아스콘 : -ton

나. 폐기물처리범위

(1) 경기도 고양시 식사동 일원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수집·운반 및 처리 (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등 일체, 상차는 시공업체에서 시행)

(2) 기타 “갑”이 요구하는 폐기물

4. 과업기간 :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20일까지

5. 폐기물처리지침

가. 식사지구 수리시설정비사업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한국농어촌공사 고양지사장을 “갑”이라 하고, 수집·운반 및 중간처리업체를 “을”이라 한다.

나. “을”은 용역 착수 전에 공정 및 현장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정표, 세부용역계획서, 기술자의 인적사항 및 운전장비 등을 첨부하여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, 작업상 불합리한 점이나 타시공 분야와 불부합 여부를 검토하여 이상여부를 “갑”에게 보고하고 이를 협의하여야 한다.

- 다. 본 작업기간 중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집하여 운반처리 하는데 있어 폐기물관리법, 도로교통법 및 기타 관련법규의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였을 때는 “을”은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여야 하며, 이를 사유로 배출처에 어떠한 민·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.
- 라. “을”은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용량 만적시 종류별,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.
- 마. 폐기물은 반드시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, 운반차량 적재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- 바. 폐기물처리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로 처리 및 반입하여야 한다.
- 사. 본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설물 파·오손이 있을 경우 “을”은 이의 없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.
- 아. 폐기물을 수집·운반 중 흘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·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·운반하여야 한다.
- 자. 작업현장의 관리는 항상 깨끗이 정리하고 청소하여 화재등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
6. 설계변경

- 가.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한 물량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용역비를 증감 정산처리 할 수 있다.
- 나. “을”은 수집, 운반 및 중간처리 완료시 폐기물 간이인계서와 계량전표에 의한 물량정산을 시행하여야 한다.
- 다. “을”은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“갑”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.

7. 용역기간의 연장

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상황 등이 발생할 시 그 기간만큼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(단, 을의 사정에 의해 반출기간이 연장될시 그 기간만큼의 지체상환금을 납부한다)

8. 용역의 준공 및 사업비 정산

- 가. 본 용역공사의 준공은 설계도서에 적합하고 소정의 제반검사가 완료되고 제 수속이 완료되었을 때를 말한다.

나. “을”은 폐기물처리 완료후 처리물량에 대하여 수집·운반확인서, 폐기물간이 인계서, 계량전표 및 반입확인서를 “갑”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 물량으로 실정산한다.

9. 기 타

가. 현장관리자는 감독관의 감독 또는 지시에 따라서 작업현장의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.

나. 감독관은 “을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동안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, 작업중지로 인한 손해는 “을”의 부담으로 한다.

- 설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할 때
-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될 때
- 다른 공사로 인해 계속작업이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

다. “을”은 용역 완료후에라도 정부 감사기관으로부터 보완설명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참석하여 보완설명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, 감사 지적에 따른 변상 요구가 있을 때에는 “갑”이 정하는 기일 내에 이를 환불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다.

라. 긴급을 요하는 작업 발생시에는 즉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.

마. 본 작업 중 감독관이 작업성질상 필요하고 쌍방이 인정되는 사항은 처리하여야 하며, 설계도서에 누락, 오기 또는 애매한 사항이 있을 시는 항상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고, 문구의 해석 등 분쟁의 조정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.